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정신건강분야)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근무예정부서
정신 건강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4명	채용일로 부터 1년	- 정신질환 조기발견, 상담 및 사례관리 -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인식 개선사업(교육, 홍보) - 의료비 지원 등	의약과 (정신건강복지센터)

※ 근무성적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직급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자격 취득 전 수련과정을 경력으로 인정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의료기관 등(보건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포함)에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정신건강복지센터 경력자 우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제5항에 따르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 보수 및 수당

- 기본연봉

임용 직급	연 봉 액	비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22,000천 원	수당, 여비 등은 별도 지급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시간외 수당,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8. 23. ~ 8. 26. <4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대리접수 가능, 팩스 · 인터넷 접수 불가)
 - ※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
 -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접 수 처 : 서대문구보건소 7층 의약과 정신건강팀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 7층 의약과 정신건강팀 (우)03718)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차 서류전형	2021. 8. 27.(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8. 31.(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
2차 면접시험	2021. 9. 10.(금)	면접장소 추후통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1. 9. 13.(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합격자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일 경우 면접심사 평가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 선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마감) 상당의 서대문구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 판매처 :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인증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또는 사본)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추가 제출

⑧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 제출 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또는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www.sdm.go.kr) '고시공고' 와 '채용공고'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 02-330-8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